

신한글로벌EMP증권투자자산신탁1호(주식-재간접형)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1.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항목	청정전	청정후
1.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1조 (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제21조 (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격을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2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격을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	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당에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최저대조표 상에 계산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당에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당에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원 단위로 절미한 셋째자리에서 4사입하여 절미한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당에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최고대조표 상에 계산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당에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당에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원 단위로 절미한 셋째자리에서 4사입하여 절미한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1.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30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제30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유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제30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유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1.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37조 (보수)	제37조 (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여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달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제37조 (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여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달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한매연기 또는 한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소신설 .	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한매연기 또는 한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한매권리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항목	청정전	청정후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근현황개시 (기준일: 직전회계연도)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실적 및 한매연환,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실적 및 한매연환,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실적 및 한매연환,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최근현황개시 (기준일: 직전회계연도 및 2021년 11월 30일)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개시 (기준일: 2021년 11월 30일)

3.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 최근현황개시 (기준일: 2021년 11월 30일)
4. 자본시장법 및 병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모투자신약 주요 투자 대상) 신한글로벌EMP증권모투자신약(주식-채간집합) 3. 재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령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련한법령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증권유동화시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상행> 4.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련한법령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증권유동화시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가. 투자대상 (모투자신약 주요 투자 대상) 신한글로벌EMP증권모투자신약(주식-채간집합) 3. 재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령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련한법령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증권유동화시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상행령과 동일> 4.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련한법령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4. 자본시장법 및 병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모투자신약 투자제한) 신한글로벌EMP증권모투자신약(주식-채간집합) 동일종류투자: 2. <상행>, 주택저당증권유동화시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저당증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증권유동화시법 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유동화시법 >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이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병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금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병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균권을 대여하거나 예치,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약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투자제한 (모투자신약 투자제한) 신한글로벌EMP증권모투자신약(주식-채간집합) 동일종류투자: 2. <상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행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이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병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금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병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균권을 대여하거나 예치,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약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4. 자본시장법 및 병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잔대조표상 에 계산된 투자신약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회사수로 나누어 1,000과 단위로 44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 에 계산된 투자신약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회사수로 나누어 1,000과 단위로 44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4. 자본시장법 및 병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2. 현애제 또는 현애제외의 결정 및 사유 < 신설 >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2. 현애제 또는 현애제외의 결정 및 사유 < 법 제230조에 따른 합병권 집행일집합투자기구의 평가를 변경하거나 평가사실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투자신약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 2 자본시장법 및 병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3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항목	형성전	형성후
1. 투자신약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 <요약정보>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최근 현황 개시
2. 자본시장법 및 병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잔대조표상 에 계산된 투자신약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회사수로 나누어 1,000과 단위로 44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 에 계산된 투자신약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회사수로 나누어 1,000과 단위로 44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3.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 최근현황개시(기준일: 2021년 11월 30일)